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1. 내과전문의로서 지정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내과분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동안 실무에 종사한 자
2.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 3 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자격시험 과목은 해당 분과 전문 과목으로 한다.
2.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제 4 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을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이사장이 공고한다.

제 5 조 (응시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내과분과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3.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첨부 1) 연수강좌, 실습, 학술대회 참가 증빙서류

국내학회 - 평점카드 또는 참석확인서

국외학회 - 명찰 또는 참석확인증

2) 학회발표 증빙서류

초록집의 표지(학회명, 일자, 장소 등 명기)

초록 복사본

3) 논문발표 증빙서류 - 논문 PDF 파일

4.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5.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제 6 조 (시험위원의 선출)

1. 분과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시험의 채점, 감독 및 필기와 구술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조 (출제 및 시험실시)

1. 시험문제는 분과위원장 책임 하에 분과별 출제위원회에서 출제한다.
2. 시험은 분과위원장 책임 하에 분과별로 실시한다.

제 8 조 (시험문제 및 배점)

1) 필기시험은 90점 만점으로 한다.

2) 구술시험은 10점 만점으로 한다.

제 9 조 (채점)

채점은 분과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날인 후 상단봉합상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합격자 결정)

1.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2. 합격 결정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합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단, 필기시험 50점이상, 구술시험 5점 이상으로 한다.
3.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과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 11 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1.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규칙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은 1998년 2월 25일 개정되었다.
3. 본 규칙은 2003년 11월 25일 개정되었다.
4. 본 규칙은 2006년 11월 22일 개정되었다.
5. 본 규칙은 2010년 7월 13일 개정되었다.
6. 본 규칙은 2018년 3월 27일 개정되었다.